무인정보단말기 등

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 방안 설명회

2024년 5월



설명회 순서

- 1.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요
- 2. 차별유형 및 대상, 예외 사유
- 3. 장애인 차별금지 영역
- 4. 권리구제 절차
- 5.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상세 내용
- 6.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FAQ

질의 응답



무인단말기 등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방안 권역별 설명회

01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요



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-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참여 보장

구성 총칙, 차별금지, 장애여성 • 아동, 권리구제 등 총 50조로 구성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시행령에 구체화



국내법과 국제법의 "장애의 정의"

장애인복지법 제2조

"**장애인**"이란

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

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

사회생활에서 상당한

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

-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**차별행위의**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
 신체적·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
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
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
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.
-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장애인권리협약 제1조

Persons with disabilities (장애인)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**사회참여**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, 정신적, 지적 손상 또는 다양한 장벽과 상호작용에 있어서 감각 손상이 있는 사람을 포함



무인단말기 등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방안 권역별 설명회

02

차별유형 및 대상, 예외 사유







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 · 배제 · 분리 ·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.



<u> 간접</u> 차별

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<mark>장애를 고려하지 않은</mark> 기준을 적용해 <mark>장애인</mark>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.



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

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<mark>편의 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</mark>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.



정당한 편의

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, 장애 유형 및 정도,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• 설비 • 도구 • 서비스 등 인적 •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

광고에 의한 차별

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• 배제 • 분리 •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.







신체적 •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



장애인을 대리 • 동행하는 자

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,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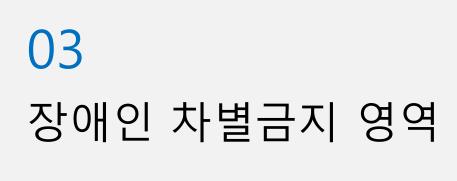
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

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

특정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

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 실현과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

무인단말기 등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방안 권역별 설명회









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,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 • 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.

 근로관계(모집·채용·임금·승진·인사· 정년·퇴직 등)에서 차별금지

채용 시 장애 여부조사를 위한 의학적 검사 금지

재활, 기능평가,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

지도 매뉴얼, 참고자료의 변경,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

시설 ·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

훈련에 있어 편의제공

장애인 보조기구의 설치 및 보조인 배치





장애인의 입학·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.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· 거부할 수 없으며, 교육 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.

저희 학교는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힘들것 같습니다. 입학 및 전학 강요·거부 금지

수업, 실험, 수학여행 등 교내외 활동의 제한 · 배제 · 거부 금지

교육활동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

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시 교육 보조인력 배치

통학 및 교육기관 내 이동 등 편의시설 제공

장애인보조기구 비치 및 의사소통수단 제공

■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



장애인이 토지·건물의 매매와 임대, 금전대출 및 신용카드의 발급 등 재화와 서비스 이용시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하면 안됩니다.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시설물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·거부하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.

보험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... 보험



■ 문화 · 예술 · 체육활동



장애인, 보조기구, 보조견의 문화 · 예술 · 체육시설 이용 및 참여를 제한 · 거부하거나 **차별**해서는 안됩니다.

국가 · 지방자치단체, 문화 · 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의 문화 · 예술 · 체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시설정비, 비치용품 구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.

문화 · 예술 활동의 차별금지

- · 출입구, 위생시설, 관람석 등 시설 정비
- · 문화, 예술,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
- · 점자안내책자,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

체육활동의 차별금지

- · 체육프로그램 운영시 장애인의 성별, 유형, 정도 등을 고려해 운영
- ·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기구 배치
- · 장애인 체육지도사 양성, 영상물 및 책자 배치





사법·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



공공기관과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·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
허가 · 신고 · 인가의 절차와 공공사업의 실시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 · 배제 · 분리 · 거부하면 안됩니다.

또한 선거권, 피선거권, 청원권 등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시설 및 보조기구 개발, 선거 정보 전달 등을 해야 합니다.

행정서비스 이용에 따른 편의 제공

- · 점자자료,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등 물적 서비스와 보조인력, 변호사, 진술 보조인 등의 인적 서비스 지원
- · 요청시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제공
- · 교정 · 구금시설에서 계구 사용에 장애유형 및 상태 감안
- · 고충상담, 교도작업,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

참정권 보장

- 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형을 고려한 투표장 시설정비, 선거정보전달, 선거용 보조기구개발, 보조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
- · 후보자 및 정당은 관련 정보에 장애인이 원활하게 접근할수 있도록 웹사이트 및 홍보물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

시법서비스 이용에 따른 편의 제공

■ 모·부성권, 성 등



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·출산·양육· 입양 등 모·부성권의 행사를 제한·배제 ·분리·거부 할 수 없습니다. 모든 장애인에게 자신의 성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. 임신 · 출산 · 양육 등 모 · 부성권 행사의

제한 · 배제 · 분리 · 거부 금지

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 제한 금지

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녀를 구분, 불이익 금지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모 · 부성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사업 및 감독 실시

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보장 및 성생활 향유 기회 제한 금지





■ 가족·가정·복지시설, 건강권 등



가족·가정 및 복지시설은 교육권, 재산권 의 행사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.

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의 진료를 **거부** 등 **차별**을 해서는 안됩니다. 장애인은 모든 폭력, 괴롭힘, 모욕, 학대, 추행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.

가족 · 가정 및 복지시설은 교육권 재산권 거주 · 이전, 외부와의 소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

장애인의 동의 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 강요 불가

장애인의 외모나 신체를 함부로 공개 금지

장애인의 성별, 유형 등이 고려된 의료 접근권 보장 및 선천적 ·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 및 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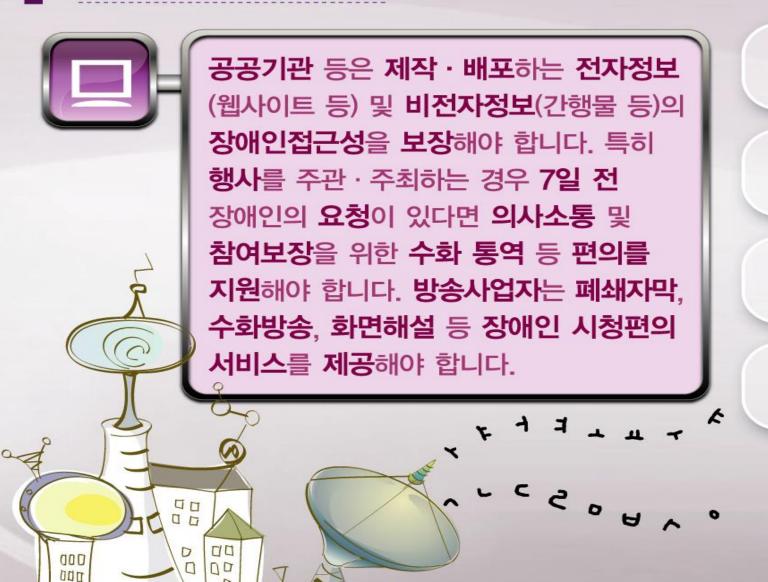
장애인에 대한 모든 폭력, 괴롭힘, 모욕, 학대, 추행 등 금지



적당한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

■ 정보

정보통신 · 의사소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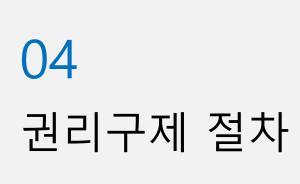


전자·비전자 정보 이용에 있어 차별금지 (2009년 4월 11일 부터 단계적 적용)

방송제작물 및 서비스 접근 · 이용을 위한 폐쇄자막 · 수화방송 · 화면해설 등 제공

공공기관 등이 주최 · 주관하는 행사 장애인이 행사 전 7일 이내 요청 시

개인정보 보호 : 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준용 무인단말기 등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방안 권역별 설명회





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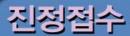
제38조(진정)

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(이하 "피해자"라 한다)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.

제39조(직권조사)

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행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(국가인권위원회, 법무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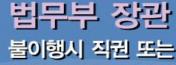


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,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, 단체, 국가인권위원회 진정



국가인권위원회 결정





불이행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시정명령 (중지, 원상회복 등)



진정인, 피진정인, 법무부 장관에 전달



시정권고 합의, 조정, 구제조치 등

시정명령

불이행시

과태료 부과 (3,000만원 이하) 무인단말기 등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방안 권역별 설명회

06

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상세내용





○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 및 행위자 대상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*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제15조 및 제21조('21.7.27 개정, '23.1.28 시행)

○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단계적 시행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

₩ 개정안 주요내용

- (무인정보단말기) 무인발권기, 무인주문기, 무인결제기,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, 주문·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
- (적용 단말기) 재화·용역 등의 제공자가 적용 여부를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과기부 고시* 인용하여 무인주문기 등 16개 유형에 적용
 - * 「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」에 따라 검증을 받은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
- (단계적 범위 등) 기관 유형 및 규모를 기준으로 3단계로 시행하되, 공공부문 우선 시행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반영
 - 바닥면적 합계가 50m² 미만 시설은 기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, 소프트웨어 및 상시지원인력을 두는 경우 적용 제외

1단계('24.1.28) : 공공·교육·의료·금융기관, 이동·교통시설 등

2단계('24.7.28): 문화·예술사업자, 복지시설,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

3단계('25.1.28): 관광사업자,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

단, 이 법의 시행일(2023. 1. 28.) 전 설치 및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는,
 2026. 1. 28. 부터 관련 의무 적용



< 무인정보단말기 >

-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,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
-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
-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, 즉 수어, 문자,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 중계수단 제공

<u></u>세부규정

- < 모바일앱 >
- (모바일앱) 스마트폰, 스마트패드,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
- (주요내용)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,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, 문제 발생 시 수어, 문자,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
- (단계적 범위 등) 공공기관 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분은 규모에 딸 순차적 3단계로 시행

1단계('23.7.28) : 공공·교육·의료·금융기관, 이동·교통시설 등

2단계('24.1.28) : 복지시설,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

3단계('25.1.28): 문화·예술·관광사업자,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

감사합니다!